懸案分析 93-1

英國의 選擧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制

1993. 1.

연구자 : 박 영 도(책임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懸案法制分析의 紹介

「懸案法制分析」은 現行法制의 바람직한 개선방안과 새로운 立法推進方向을 제시하려는 취지에서 최근 입법상 쟁점이 되고 있는 懸案問題를 爭點立法의 背景과 主要內容, 爭點事項등을 外國의 立法例를 참조하여 短期에 심층적으로 分析하여 발간하는 不定期刊行物입니다. 「懸案法制分析」에 게재된 내용은 研究院의 公式的 見解가 아님을 밝히며, 기타 문의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의 103
한국법제연구원 국내법제연구실
TEL. 722-0163~5

目　　次

Ⅰ. 概　說 1

Ⅱ. 英國에서의 選擧腐敗 및 違法行爲의 制裁 2

1.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의 立法背景 3

2.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의 特徵 4

Ⅲ.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의 全文 8

第 1 章　腐敗行爲 8
第 2 章　違法行爲 10
第 3 章　違法的 報酬支給·雇用·賃貸借 13
第 4 章　腐敗行爲, 違法行爲 또는 違法的인
　　報酬支拂·雇用·賃貸借의 確定 및 例外 16
第 5 章　選擧費用 18
第 6 章　選擧人의 資格喪失 28
第 7 章　選擧請願에 대한 訴訟節次 31
第 8 章　기타 特別規定 37
第 9 章　合法的 訴訟節次 39
第 10 章　補則規定·定義規定·留保規定·撤回規定 43
第 11 章　스코틀랜드에 대한 法律適用 47
第 12 章 아일랜드에 대한 法律適用 47

英國의 選擧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制

Ⅰ. 概 說

이번의 第14代 大統領選擧는 과거와는 달리 不正選擧是非나 不服反撥도 없이 비교적 公正하고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치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第14代 大統領選擧와 관련하여 事前選擧運動이 시작된 8월 28일부터 法定選擧運動期間 마지막날인 12월 17일까지 不法選擧運動事例 1754건 중 2929名을 적발, 이 가운데 125名이 구속되고 1500名이 불구속입건되는 등 지난 第13代 大統領選擧當時의 단속실적과 비교하면 총적발자는 403%, 拘束은 103%, 不拘束은 336%씩 각각 증가되었으며 이를 類型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월 19일 경찰청 발표자료).

유 형	단속인원
금품살포	485명
향응제공	327명
소형인쇄물 배포·부착	1256명
벽보 및 현수막게시 훼손	353명
매수 및 이해유도	70명
호별방문	141명
후보비방	86명
선거폭력	31명
기 타	180명

위의 도표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不法選擧運動事例 가운데 이른바 「金權選擧事犯」인 금품살포·향응제공·매수 및 이해유도 등이 882名으로 전체 단속인원 중 약 31%를 차지함으로써 이번 選擧의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는 事案 가운데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는 「金權選擧」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번 選擧過程에서 나타난 금권선거를 막는 制度的 裝置가 어떤 형태로든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政府는 향후 新政府의 출범과 함께 選擧制度改革特別委員會를 구성하여 각종 選擧法과 政治資金法을 대폭 개혁하여 돈안드는 선거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政治家가 選擧에 즈음하여 當選을 하기 위하여 소정의 金錢이 필요한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當選을 할 목적으로 행하는 매수 내지 향응제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選擧運動일 뿐 아니라 選擧의 公正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規制되어야 한다. 물론 현행 각종 選擧法에서도 選擧犯罪에서 나타나는 腐敗 내지 違法行爲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規制措置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規定內容이 미흡하고 또한 현실을 무시한 규정도 다수 지적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實情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어 現行 選擧法에서 나타나는 選擧犯罪의 現實의 動向에 주목하는 경우 우리 나라에서의 腐敗選擧를 방지하는데 많은 示唆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近代選擧法의 母國이라고 일컬어지는 英國의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Corrupt and Illegal Practice Prevention Act)」을 소개하기로 한다.

Ⅱ. 英國에서의 選擧腐敗 및 違法行爲의 制裁

1.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의 立法背景

英國의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은 1883년의 제2차 Gladstone內閣下에서 제정되었다. 이 法律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買收, 饗應, 脅迫, 身分詐稱, 費用制限 등을 초과한 경우에 被選擧權을 박탈하고 또한 連坐制를 적용하여 處罰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選擧의 公正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法律이 제정되기 까지에는 많은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즉 英國革命後의 18세기에 있어서는 國王이나 유력한 政治家가 기밀비를 사용하여 下院을 조종하고 年金, 영전이나 이익등에 의한 議員의 매수가 지나치게 행하여 졌다. 한편 이미 英國革命後의 1696년에는 법외적인 금전을 선거에 지출한 의원을 실격시키는 饗應法(Treating Act)이 제정되었으며, 30년후의 1729년에는 買收法(Bribery Act)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매수법이 제정되어도 당선인들은 매수나 향응을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하여 腐敗防止의 效果는 전혀 지속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그 효과는 19세기에서도 여전하였다.[1] 1832년에 第1次選擧法이 제정되어 選擧權의 확대가 도모되고 腐敗防止行爲를 개정할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나,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議員候補者나 選擧事務長 기타 관계자와 선거인과의 사이에 腐敗行爲는 성행하였다. 이러한 정치부패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解決策으로 제정된 것이 1854년의 腐敗行爲防止法(The Corrupt Practice Prevention Act)이다. 이 法律의 특징은 선거에 관한 弊害를 조사하는 권한을 委員에게 부여하여 選擧費用의 감사를 하는 會計監査委員을 두고, 매수, 향응 기타 不法行爲를 처벌하는 엄격한 규정을

---

1) Cornelius O'Leary, 「The Elimination of Corrupt Practices in British Election 11」, 1962.

두었다. 그러나 이 法律은 選擧費用支出의 제한도 없고 監査를 하는 회계감사위원은 調査權을 행사할 수도 없다는 점 때문에 腐敗行爲의 방지에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교묘한 형태로 점점 腐敗行爲를 증가시켰다.

그 후 1872년에는 秘密投票法(The Ballot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에 의해서 選擧人의 票의 행방을 파악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票의 시장가치는 저하되고 買收, 饗應은 감소되었으나 근절되지는 못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1880년에 실시된 總選擧는 사상 최악의 腐敗選擧가 되기도 하였다.[2] 그리하여 1880년부터 3년에 걸친 論議 및 修正을 거쳐 성립한 것이 1883년의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이다.

2.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의 特徵

이 法律의 주요 特徵으로는 다음의 6가지 事項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選擧腐敗를 腐敗行爲(Corrupt Practices)와 違法行爲(Illegal Practices)로 구분하여 각각의 행위에 명확한 定義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前者는 그 행위가 어느 候補者에게 투표시킬 목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不正이 되는 행위이며, 行爲自體의 성질상 선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目的에 부패한 행위가 있고 동시에 選擧에 연결되기 때문에 腐敗行爲가 되며 그 행위의 時期如何에 관계없이 문제된다. 後者에 있어서는 選擧運動의 비용과 방법을 제한하고 選擧에 수반하여 당연히 행해지

---

2) 1880년에 런던동남에 있는 Sandwich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選擧腐敗를 조사한 王立調査委員會(The Royal Commission of Enquiry)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동 報告書에는 秘密投票制는 매수를 견제하는데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점, 현재의 選擧費用의 보고에 관한 법률은 腐敗를 방지하는 목적에 전혀 이바지할 수 없다는 등 5개항에 걸친 報告가 행해졌다.

는 행위중 정도가 法에 위반되는 行爲로서, 선거와 밀접히 연결되는 점에서 보통 選擧期間內의 행위에 한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가 정당한 선거운동으로서 인정되는가를 정한 것으로 選擧自體에 대한 統制가 직접 문제가 되는 것이다.[3]

둘째, 選擧訴訟의 심리에 즈음하여 향응이나 부당억압이외의 腐敗行爲의 罪가 후보자자신, 또는 후보자의 故意의 승인하에 범하여 졌다고 보고된 경우 또는 향응, 부당억압의 죄가 候補者自身에 의해 범해졌다고 보고된 경우에는 그 候補者는 영구히 下院議員에 선거될 資格이 없게 된다는 점이다.

세째, 선거소송의 심리에 즈음하여 候補者의 代理人에 의해서 부패행위의 罪를 범했다고 보고된 경우에는 候補者는 7년간 下院議員에 선거될 자격이 없다는 점이다.

네째, 腐敗行爲 때문에 기소되어 有罪宣告를 받은 자는 선고일로 부터 7년간 國會議員選擧와 본 법의 범위에 속하는 公職選擧를 불문하고 영국에 있어서 모든 選擧에서 선거인으로서 登錄되거나 投票를 할 자격을 상실하며, 또한 公職 또는 司法職에 취임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다섯째, 選擧費用의 최고한도액(법정선거비용)제도를 도입하여 1인의 選擧責任者(출납책임자)에게 후보자의 選擧費用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罰金을 부과하고 선고일로 부터 5年間 선거인으로서 登錄되거나 投票할 수 없도록 한 점이다.

여섯째, 선거소송을 迅速하게 또한 實效的으로 하기 위하여 裁判制度의 개선을 도모한 점이다. 특히 커다란 특징은 選擧訴訟의 起訴(원고)를 檢察總長(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의 책무로 한 점이다. 또한 낙선된 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①當選者가 피선거자격이 없을 때, ②選擧運動·

3) 朴承載, 「選擧制度論」, 一潮閣 1966, 290面.

投票 및 計票에 있어서 어떤 부정이 있을 때, ③당선자에게 選擧法違反이 있을 때 無效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그 訴訟이 당선자의 피선거자격 문제라면 下院이 그 문제를 결정하고, 또한 腐敗·違法行爲라면 그 소송은 高等法院의 刑事裁判部(The King's Bench Division of the High Court of Justice)의 2인의 판사에 의하여 심리된다. 審理結果가 하원에 보고되면 소송사건의 결과는 決定된다.

이 法律의 제정에 의해서 아래의 圖表에서 보듯이 選擧犯罪는 영국에서 대폭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選擧訴訟은 1968년 7월에 제정된 議會選擧法(The Parliamentary Election Act)에 의해서 의회로 부터 法院으로 옮겨졌다. 이후 현재까지 런던에 있는 高等法院(High Court)의 王座部가 임명하는 2인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法院(Court of Common Pleas)에서 행해지고 있으나, 裁判件數는 감소하고 지금은 조금 과장한다면 開店休業狀態에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1883年法에 의해서 의무화된 選擧費用報告書의 제출은 현재에도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 報告書는 下院議院 圖書館에 보관되어 의원의 상호감시하에 議員이면 누구라도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현재 이 法律은 1949년의 「國民代表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에 상당 부분이 흡수·통합되어 繼承되고 있다.[4]

---

4) 「國民代表法」에 관한 것은 國會圖書館 立法調査局, 「英國의 國民代表法」, 立法參考資料 第100號, 1969 및 法制處, 「各國의 選擧關係法」, 法制資料 第112輯, 1980 參照.

【英國總選擧에서의 選擧訴訟件數와 當選無效件數】[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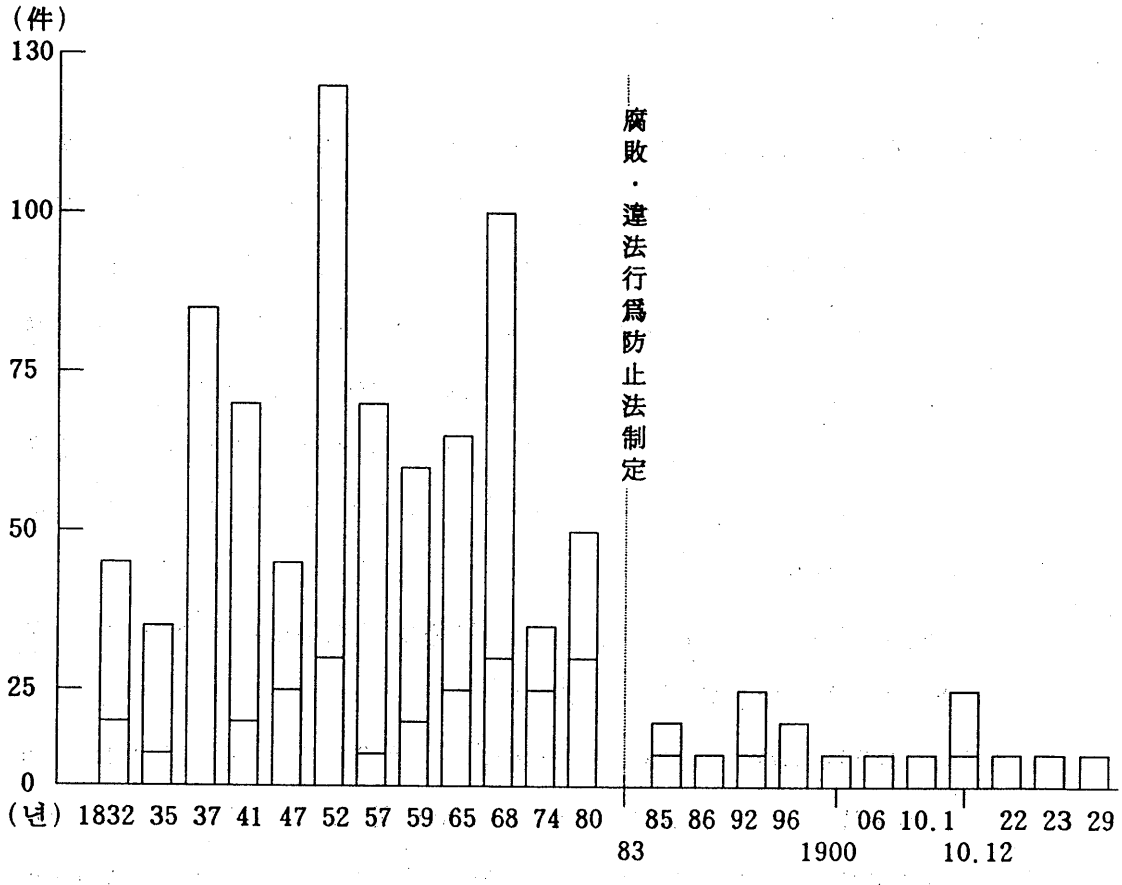

<참고>

상: 소송건수
하: 당선무효건수

※1910년은 1월과 12월에 총선거 실시
소송건수에는 소송취하와 당선확인등도 포함

5) 이 圖表는 日本 每日新聞 1992년 11월 4일자 記事를 참조하여 作成한 것임.

Ⅲ. 「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의 全文[6]

第 1 章 腐敗行爲(Corrupt Practice)

제1조 (饗應 :Treating) (1) 선거전·중·후를 막론하고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아니하도록 어떠한 자 또는 기타의 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또한 어떠한 자 또는 기타의 자가 투표하였거나 투표하지 아니 하였거나 투표할 예정이었거나 또는 투표하지 아니할 예정이었다는 사유로, 어떠한 자에게 또는 어떠한 자를 위하여 육류, 음료, 향응, 식료품 또는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기자신이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공여 또는 지불하게 한 자는 향응의 죄로 처벌한다.

(2) 부정하게 육류, 음료, 향응 또는 식료품을 수취하였거나 이에 응한 모든 선거인도 향응의 죄로 처벌한다.

제2조 (不當한 影響力 : Undue influence) 투표하도록 또는 투표하지 아니하도록 어떠한 자를 권유 또는 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어떠한 자가 투표하였거나 또는 투표하지 아니한 사유로 직접·간접으로 자기자신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 자에게 강제력, 폭력의 행사, 감금 및 가해의 협박을 하거나 정신적·물질적인 위해나 손실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는 자는 부당한 영향력행사의 죄로 처벌한다. 유괴, 강박, 위계, 사술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의 자유로운 선거권행사를 방해저지하는 자 및 선거인에게 투표하도록 또는 투표하지 아니하도록 강요, 권유 또는 설득을

---

6) THE STATUTES REVISED, 3rd Edition. 또한 金洙興, 「議會議員選擧時 腐敗 및 違法行爲禁止法(上)(下)」, 立法調査月報 1991.6·7·8. 參照.

하는 자도 부당한 영향력행사의 죄로 처벌한다.

제3조 (腐敗行爲 :Corrupt Practice) 이 법에서 "부패행위"란 이 법에서 정한 향응, 부당한 영향력행사 또는 제3장에 규정한 증수뇌 및 신분사칭을 말한다. 또한 이법의 부칙 제3항에 의한 신분사칭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 상담 또는 주선하는 행위 및 모든 위반행위는 1868년 의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부패행위가 된다.

제4조 (腐敗行爲로 起訴된 候補者의 處罰 : Punishment of Candidate found on election petition, guality personally of corrupt practices) 1868년 의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선거구 또는 지방지역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에서 의장에게 제출된 선거법원의 보고서에 당해 선거에서 향응이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가 아닌 부패행위가 후보자의 인식과 동의하에 범해졌다고 보고된 경우, 또는 향응이나 부당한 영향력행사가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에 의하여 범해졌다고 보고된 경우, 그 후보자는 당선될 수 없으며 당해 선거구를 위하여 하원에 출석할 수 없다.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되며, 부패행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 (代理人의 腐敗行爲로 有罪判決을 받은 候補者의 處罰 : Punishment of candidate found on election, guality by agents of corrupt practices) 당해선거에서 부패행위를 범한 선거구 또는 지방지역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에 대한 선거법원의 보고에 의해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대리인의 부패행위로 죄를 범했을 경우 그 후보자는 당선될 수 없으며, 보고가 있은 날로부터 7년동안 선거구 및 지방정부지역에서 하원으로 출석할 수 없다. 또한 비록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제6조 (腐敗行爲로 有罪判決을 받은 者의 處罰 : Punishment of person convicted on indictment of corrupt practices) (1) 신분사칭 이외의 부패행위를 범하거나 이를 방조, 교사, 상담 또는 주선하는 자는 경범죄가 되며 그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신분사칭, 방조, 교사, 상담 또는 주선한 죄를 범한 자는 중죄가 되며 그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부패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유죄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년동안 (a)의회의원선거 및 공직선거를 막론하고 연합왕국의 선거에서 선거인으로 등록될 수 없고 투표할 수 없으며, (b)어떠한 공직이나 사법직도 이를 보유할 수 없다. 만일 위와 같은 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날로부터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4) 의회의원선거에서 부패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당선될 수 없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후 5년동안 하원에 출석할 수 없으며, 비록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선은 유죄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第 2 章 違法行爲(Illegal practices)

제7조 (違法的인 金錢支給 :Certain expenditure to be illegal practice)

(1) 선거시 어느 후보자의 당선을 조장 또는 주선할 목적으로 (a)우마차, 철도 또는 기타의 수송수단을 임대하여 투표소까지 또는 투표소로부터 선거인을 수송하거나, (b)선거인에게 유세장, 벽보 또는 공고를 위해 주택, 토지, 건물 또는 공고장소를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금전지급 또는 지급계약도 금지된다.

(2) 이 법이 허용하는 예외가 있더라도, 선거의 전·중·후를 막론하고 이 법에 위반하여 어떠한 금전지급 또는 지급계약을 고의로 체결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이나 금전지급의 계약을 행한 자는 위법행위로 처벌한다. 또한 그 금전의 지급을 수취하거나 그 계약에 가담한 자도 역시 위법행위로 처벌한다.

(3) 광고업자로서 금전지급을 받고 벽보와 광고물을 전시하는 것이 그의 통상적인 업무이며, 그 금전지급이나 계약이 이러한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8조 (違法한 超過金錢支出行爲 : Expense in excess of maximum to be illegal practice) (1) 이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은 선거의 전·중·후를 막론하고 당해 선거의 실시나 관리를 이유로 하여 또는 이에 관련하여 부칙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어떠한 금액도 지출할 수 없으며 어떠한 비용의 지출도 수반될 수 없다.

(2) 동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위법행위를 범한 것으로 처벌한다.

제9조 (違法的인 候補辭退의 虛僞陳述 : Publishing of false statement of withdrawal to be illegal) (1) 선거전 또는 선거중에 어느 후보자의 당선을 조장 또는 주선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후보사퇴의 허위진술을 공표하는 자는 위법행위를 범한 것으로 처벌한다.

(2) 후보자는 그의 선거사무장이 아닌 다른 대리인에 의하여 범하여진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그의 당선이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제10조 (違法行爲의 有罪判決 : Punishment on conviction of illegal practice) 전술한 항 및 이 법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약식재판에서 1백파운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행위를 범한 선거구 또는 지방정부지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년동안 선거인으로 등록되지 못하며 어떠한 선거에서도 투표할 수 없다.

제11조 (違法行爲에 대한 選擧法院의 報告書 : Report of election court respecting illegal practice) 1868년 의회의원선거법 제11조 제14항의 부패행위를 이 법에서 위법행위로 대체하여 재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 선거구 또는 지방정부지역의 선거소송에서 선거법원은 의장에게 서면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며, 당해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가 그의 선거사무장에 의한 위법행위로 유죄처벌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보고한다. 의장에 대한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a)선거법원의 보고서에는 당해 선거에서 어떠한 위법행위가 후보자의 인식과 동의하에서 범해진 것인지의 여부, 그 경우 당선될 수 없으며 그 보고가 있는 다음 날로부터 7년동안 당해 선거구 또는 지방정부지역의 하원에 출마 할 수 없다는 사실,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선이 무효가 되며 보고한 당일에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자격이 상실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하고, (b)보고서에는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그의 대리인에 의한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후보자는 당선될 수 없으며 당해 선거의 의회의원 임기동안 전술한 선거구 또는 지방정부지역의 하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과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12조 (違法行爲에 대한 選擧委員의 役割 : Extension respecting election commissioners to illegal practices) 1852년 선거위원법 및 개정법률에 따라 임명된 선거위원은 전술한 법과 개정법률에서 "부패행위"가 위법행위를 포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할 수 있다. 1852년 선거위원법은 이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수정되며 1852년 법에서 "부패행위"는 이 법에서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

第 3 章 違法的 報酬支給·雇用·賃貸借(Illegal Payment, Employment, and Hiring)

제13조 (違法行爲에 대한 金錢提供 또는 違法的 報酬支給 : Providing of money for illegal practice or payment to be illegal payment) 고의적으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보수의 지불 또는 이 법에 의하여 허용된 최고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또는 이 보수지불 내지 비용에 지출한 금전의 충당을 위하여 금전을 제공한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법적인 금전지출죄로 처벌한다.

제14조 (輸送馬車의 賃貸借 : Employment of hackney carriages, or of carriages and horses kept for hire) (1) 어떠한 자도 선거인을 투표소까지 또는 투표소로부터 수송할 목적으로 공동마차, 전세마차 및 기타의 차량을 대여·임대 또는 운행시킬 수 없다. 위 수송수단이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한 자는 위법임차의 죄를 구성한다.

(2) 어떠한 자도 선거인을 투표소까지 또는 투표소로부터 수송하기 위하여,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목적으로의 대여·임대 또는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차량소유자는 공동마차·전세마차 또는 기타의 차량을 임차·대용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행한 자는 위법임대차의 죄를 구성한다.

(3) 어떠한 규정도 선거인 또는 다수의 선거인들이 투표소까지 가거나 투표소로부터 돌아오기 위하여 그들의 공동부담으로 차량을 전세, 임차, 운행 또는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4) 어떠한 자도 선거인을 투표소까지 또는 투표소로부터 수송하기 위하여 금전지급이나 지급약속없이 운행한 차량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제15조 (候補者의 不正辭退 : Corrupt withdrawal from a candidature) 보수의 지불 또는 지불약속 등 매수행위로 후보직에서 사퇴하도록 타인을 권유하였거나 주선한 자 및 권유 또는 주선에 의해 후보직을 사퇴한 자는 위법행위의 죄를 구성한다.

제16조 (違法的인 報酬支拂 : Certain expenditure to be illegal) (1) 후보자의 당선을 추진하거나 주선할 목적으로 악대, 횃불, 기, 포스터를 사용한 이유로 보수지불 또는 지불계약을 할 수 없다.

(2) 이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의 전·중·후를 막론하고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의 지불 또는 지불계약을 한 경우에는 위법적인 금전지불의 죄를 구성한다. 또한 그 금전지불을 수취하거나 계약에 가담한 자는 그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위법적인 보수지불의 죄를 구성한다.

제17조 (違法的 雇傭 : Certain employment to be illegal) (1) 어떠한 자도 선거시 후보자의 당선을 추진하거나 주선할 목적으로 보수의 지불 또는 지불계약의 약속 및 고용이 금지된다.

⑵ 이 법에서 허용되는 예외가 있더라도 선거의 전·중·후를 막론하고 어떠한 자가 제1항에 위반해서 고용된다면 고용한 자 및 고용된 자는 위법고용의 죄로 처벌한다.

제18조 (選擧關係發行物에 印刷業者의 姓名 및 住所記載 : Name and address of printer on placard) 선거에 관련된 벽보, 플래카드, 포스터의 표면에는 인쇄업자와 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 광고물의 표면에 인쇄업자 및 발행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자는 그가 후보자이거나 선거사무장이거나를 불문하고 위법행위를 범한 것으로 처벌하며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아닌 자는 약식재판에서 1백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債權者의 救濟 : Saving for creditors) 이 법에서 보수지불 및 지불계약 그리고 이 법에서 허용된 최고한도액을 초과한 선거비용의 지출 및 부담을 금지하는 규정은 당해 계약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때 그 계약 또는 비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을 알지 못했던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 (酒類 또는 飮料 販賣店 및 國民學校의 集會室 使用과 違法的인 賃貸借 : Use of committee room in house for sale of intoxicating liquor or refreshment, or elementary school, to be illegal hiring) (a)도매 또는 소매로 주류의 판매가 면허로 허용된 장소 (b)주류판매장소 및 정치적 기관 이외의 클럽 또는 사회조직체에 제공된 장소 (c)음식 내지 음료를 소비용으로 판매하는 장소 (d)매년 의회의 혜택을 받는 공립 국민학교나 그런 장소의 일부 등은 선거시 후보자의 당선을 조장하거나 주선할 목적으로 유세장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만약 어떠한 자가 그 장소 및 장소의 일부를 유세장으로 임대차하거나 또는 이용한다면

그는 위법적인 임대차의 죄를 구성하며, 그 장소가 유세장으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장소 또는 일부를 임대해 준 자도 역시 위법적인 임대차의 죄를 구성한다.

제21조 (違法的인 報酬支拂, 雇用, 賃貸借의 處罰 : Punishment of illegal payment, employment, or hiring) (1) 위법적인 보수지불, 고용, 임대차의 죄를 범한 자는 약식재판에서 1백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인적으로 위법적인 보수지불, 고용, 임대차를 범한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장은 위법행위의 죄를 구성한다.

第 4 章 腐敗行爲, 違法行爲 또는 違法的인 報酬支拂·雇用·賃貸借의 確定 및 例外 (Excuse and Exception for Corrupt or Illegal Practice Illegal Payment, Employment or Hiring)

제22조 (代理人의 腐敗行爲 또는 違法行爲에 대한 候補者의 免責報告書 : Report exonerating candidate in certain cases of corrupt and illegal practice by agents) 선거구 또는 지방정부지역의 선거청원에 관한 심판에서 선거법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그의 대리인에 의하여 경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기타의 위법행위를 범한 것으로 보고되고, 당해 후보자가 다음 사실을 법원에 입증하였다고 보고된 경우에는 당해 후보자의 당선은 보고서에서 언급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아니하며, 후보자는 어떠한 자격도 상실되지 아니한다.

(a) 어떠한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도 당해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장에 의하여 범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과 이 보고서중에 기재된 범죄는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장의 지시에 반하여 행해졌고 승인 또는 묵인없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

(b) 당해선거에서 후보자 및 그의 선거사무장이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였다는 사실

(c) 보고된 범죄행위가 경미하고 중요하지 않거나 부분적 성격을 띠었다는 사실

(d) 모든 다른면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와 그의 대리인측에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가 전연 없었다는 사실

제23조 (違法行爲로 부터 救濟할 수 있는 高等法院 및 選擧法院의 權限 : Power of High Court and election court to except innocent act from being illegal practice) 제기된 신청에 대하여, 고등법원 및 선거법원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이 법원에 입증된 경우와 법원이 제반사정상 그 후보자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하여 그 작위나 부작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작위나 부작위를 위법행위, 위법지불, 위법고용 또는 위법임대차를 규정한 이 법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누구라도 이 명령이 있은 후에는 그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a)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이 조의 규정과는 별도로 위법행위, 위법지불, 위법고용 또는 위법임대차가 된다는 사실

(b) 작위 또는 부작위가 부주의나 우연한 오판 기타 이에 준하는 다른 합리적 사유에 의거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든지 불성실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c)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신청통지를 당해 선거가 실시된 선거구 또는 당해 지방정부지역에 제출하였다는 사실

第 5 章 選擧費用(Election Expenses)

제24조 (選擧事務長의 任命 : Nomination of election agent) (1) 선거사무장은 선거지정일 또는 그 전에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를 대리하는 자가 지명한다.

(2) 후보자는 자신을 선거사무장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정이 허락하는 한 후보자 및 선거사무장으로서의 양자의 지위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받는다. 이 법 중 선거사무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선거사무장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선거지정일 또는 그 전에 각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의 성명 및 주소는 당해 후보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가 관계공무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선거사무장은 각 후보자에 대하여 1인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임명은 임명된 선거사무장이 후보자 자신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이를 취소할 수 있다. 선거의 전·중·후를 막론하고 선거사무장의 임명이 취소되거나 선거사무장이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다른 선거사무장을 임명하여 그 성명과 주소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選擧副事務長의 任命 : Nomination of deputy election agent as sub-agent) (1) 이 법의 부칙 제1조에 따라 특정한 선거의 경우에 후

보자의 선거사무장은 당해 선거구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사무장(이 법에서 부사무장은 sub-agent로 칭한다)의 수를 정할 수 있다.

(2) 부사무장이 있는 선거구의 사무에 관하여는 부사무장이 선거사무장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법의 목적상 당해 선거구내에서 부사무장에 의하여 행해진 행위나 부사무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를 선거사무장이 한 행위로 간주한다. 부사무장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그가 선거사무장이었다면 위법행위 또는 기타 이 법에 의한 위법행위가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작위나 부작위는 부사무장에 의하여 행해진 위법행위 또는 이 법의 위법행위로 보며, 당해 부사무장은 그에 따라 처벌된다. 이 경우 당해 후보자는 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선거사무장이 스스로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었던 것과 동일하게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선거사무장은 투표일전에 모든 부사무장의 성명과 주소를 관계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관계공무원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4) 부사무장의 임명은 그를 임명한 선거사무장이 사임한 경우에도 취소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경우 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일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부사무장의 임명이 취소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부사무장을 임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의 성명과 주소를 즉시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 (**選擧事務長 및 副事務長의 事務所** : Office of election agent and sub-agent) (1) 모든 선거사무장 및 부사무장은 모든 청구·통지·영장·소환장 및 문서를 받을 수 있는 사무소를 가져야 한다. 사무소의 주소는 당해 선거사무장 및 부사무장의 임명과 동시에 관계공무원에게 신

고하여야 하며, 그 성명이 즉시 공고되어야 한다. 또한 사무소는 지방정부지역이나 그 선거구 또는 인접한 지역안에 소재하여야 한다.

(2) 모든 선거사무장 또는 부사무장에게 배달된 청구·통지·영장·소환장 및 문서는 그의 사무소에 전달되는 경우 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선거사무장 또는 부사무장은 당해 선거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 (選擧事務長을 통한 契約의 締結 : Making of contracts through election agent) (1)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스스로 또는 부사무장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를 대리하여 모든 투표참관인, 유급서기 및 유급연락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후보자를 대신하여 각 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다.

(2) 선거행위 및 관리로 인한 비용의 지출을 수반하는 계약은 그것이 후보자자신이나 선거사무장 또는 부사무장에 의해 체결된 것이 아닌 한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행할 수 없다. 다만 그 계약체결에 대한 후보자의 주의부족은 그의 대리인이 행한 부패 및 위법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당해 후보자에게 면제시키지 아니한다.

제28조 (選擧事務長을 통한 費用의 支出 : Payment of expenses through election agent) (1) 이 법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시 후보자 및 그의 대리인 또는 기타의 자는 선거의 전·중·후 어느 때를 막론하고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에 의하거나 선거사무장을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에 관한 어떠한 지출·대출 또는 저축도 할 수 없다. 기부금·차용금·대출금·저축 등 선거관리를 위해 발생한 모든 경비에 대해서 후보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장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기타의 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합법적으

로 지출이 수반된 소액비용을 자신의 사재에서 지출하고 이를 환급받지 못한 자의 경우, 그 소액비용에 대해서는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위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용을 지출, 대출 또는 저축하거나 전기와 같이 제공된 금전을 위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출한 자는 위법행위의 죄를 구성한다.

제29조(選擧費用에 대한 請求書의 送付 및 請求期間 : Period for sending in claims and making payments for election expenses) (1) 선거관리를 위한 비용에 대해서 선거사무장 또는 부사무장이 행한 모든 지출은 40실링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서 및 영수증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2) 이 법에서 제한한 기간내에 선거사무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선거비용에 관한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금지하며 지불할 수 없다.

(3) 이 법에서 허용되는 예외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허용하는 청구서 송부기간은 후보자의 당선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다.

(4) 후보자를 위한 모든 선거비용은 이 법에서 허용한 기간내에 지불되어야 한다. 예외가 있더라도, 이 규정에 위반해서 지불한 선거사무장은 위법행위로 처벌한다.

(5) 이 법에서 허용되는 예외가 있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모든 선거비용의 지불허용기간은 후보자의 당선이 확정된 날로부터 28일 이내이다.

(6) 어떠한 지불이 당해 후보자의 승인 또한 묵인없이 선거사무장에 의하여 행해졌다는 사실을 당해 후보자가 선거법원에서 입증하고 선거법원이 이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지 아니하며,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해서 지불이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후보

자가 이 법에 따라 자격을 상실당하지 아니한다.

(7) 이 법에서 허용된 기간내에 송부된 청구에 대하여 선거사무장이 그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에서 언급한 28일의 기간내에 지불을 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그 청구는 이의있는 청구로 본다.

(8) 청구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있는 청구에 대해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할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에 의하여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장이 지불한 모든 비용은 이 법의 허용기간내에 지불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의 규정에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청구는 선거사무장에 의해 지불된 것으로 본다.

(9) 청구자 또는 후보자나 그의 선거사무장은 그 청구가 14일의 기간후에 송달되거나 선거사무장이 아닌 후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선거비용의 청구에 대한 지불허가를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명령으로 지불허가를 할 수 있다.

(10)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허가명령에 지시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또한 허가에 따라 지불된 때에는 이 법에서 허용한 기간내에 지불된 것으로 본다.

제30조 (候補者에 대한 請求推尋에 관한 事項 : Refernece to taxation of claim against candidates) 청구자는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하여 이의있는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소송에서의 피고가 자기의 채무를 인정하나 그 청구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다른 명령를 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금액은 추심을 위하여 즉시 당해 법원의 서기, 등록관 또는 기타의 관계공무원에게 회부되어야 한다. 추심될 액으로 결정한 금액이 그 청구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변제받을 금액으로 한다.

제31조 (候補者의 個人費用 및 雜費 : Personal expenses of candidate and petty expenses) (1)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1백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선거에 기인하거나, 당해 선거에 관련하거나 또는 선거에 부수되어 지출이 수반되는 개인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상 지출이 수반되는 개인비용은 선거사무장이 지출하여야 한다.

(2) 후보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제한된 기일내에 전항의 지출한 개인비용의 액수를 서면으로 그의 선거사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그 권한 위탁시에 지정된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문구류구입대금, 우편요금, 전신요금 및 기타의 잡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4)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지출한 지출명세서는 이 법에 의하여 제한된 기일내에 당해 선거사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포함한 계산서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제32조 (選擧事務長의 報酬 및 選擧公務員의 費用 : Remuneration of election agent and returning officer's expenses) (1) 이 법은 사정이 허용하는 한 선거사무장의 보수청구 및 그 지불에 있어서 다른 채권자인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적용한다. 청구액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이 법 소정의 이의있는 청구로서 처리된다.

제33조 (選擧費用에 관한 報告 및 申告 : Return and declaration respecting election expenses) (1) 선거결과가 공고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당해 선거에 입후보한 모든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이 법의 부칙2에 규정된 양식 또는 동일취지에 따른 양식으로 된 정식보고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정식보고서는 당해 후보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선거사무장이 지출한 총지출액의 명세서와 모든 청구서 및 영수증(즉, 이 법에서 "선거비용에 관한 보고"에 포함되는 청구서 및 영수증)

(b) 후보자에 의하여 지출된 개인비용이 있는 경우 그 액수에 관한 명세서

(c) 선거사무장이 알고 있는 모든 이의있는 청구

(d) 선거사무장이 알고 있는 고등법원에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미지급청구액이 있는 경우 그 모든 미지급청구액의 명세서

(e) 지급이 수반되었거나 수반될 선거비용을 위하여 후보자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선거사무장이 받은 모든 금전, 유가증권, 금전등가물의 명세서 및 이를 증여한 자의 성명

(2) 관계공무원에게 제출된 보고는 이 법의 부칙2(이 법에서 선거비용에 관한 신고와 관련된 것)의 양식으로 치안판사앞에서 선거사무장에 의한 보고를 필요로 한다.

(3) 후보자 자신이 선거사무장인 경우에는 선거비용에 대한 보고서에는 당해 후보자가 지출한 모든 금전, 유가증권 및 금전등가물의 명세서가 후보자로부터 선거사무장이 받은 금전, 유가증권 및 금전등가물의 명세서로 대용하여야 한다. 선거비용에 관한 선거사무장의 보고서는 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며 선거비용에 대한 후보자의 신고서는 부칙2에 규정된 양식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정작성되어야 한다.

(4) 선거사무장이 동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또는 그 후 7일 이내에 후보자는 이 법의 부칙2의 1항에 규정된 양식으로 치안판사앞에서 그가 작성한 신고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어느 후보자이든지 선거비용에 대한 보고서 및 신고서가 제출기한의 만료일이전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고서 및 신고서가 제출될 때

까지 또는 그 보고서 및 신고서의 제출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면책사유의 인정을 받는 날까지, 당해 선거가 실시된 선거구의 하원의원으로서 하원에 출석하거나 투표할 수 없다. 이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석 또는 투표한 경우에는 매출석 또는 투표일수에 따라 1백파운드를 강제징수한다.

(6) 이 법에서 언급한 정당한 면책사유 없이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이 이 규정의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처벌한다.

(7)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신고서를 고의로 허위작성한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처벌한다.

(8) 보고서의 제출시에 후보자가 영연방국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위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신고서는 그가 영연방국으로 귀환한 후 14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는 즉시 관계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신고의 지연은 선거비용에 대한 보고와 신고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선거사무장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9) 선거비용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고등법원이 청구에 관하여 지불허가를 한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사무장은 그 지불 후 7일 이내에 그 허가에 따라 지불된 액수에 관한 보고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에는 허가를 부여한 법원의 명령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이 의무를 이 법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필요요건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選擧費用의 報告 및 申告의 不履行에 관한 公認된 免責事由 : Authorized excuse for non-compliance with provision as to return

and declaration respecting elelction expenses) (1) 선거시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보고서 및 신고서가 이 법의 요건대로 제출되지 않거나 오기 및 허위기재로 제출된 때, (a) 후보자가 고등법원 및 선거법원에 신청해서 보고서 및 신고서의 제출불이행, 오기, 허위기재가 후보자의 질병 및 선거사무장이나 부사무장 또는 이들 사무원의 부재, 사망, 질병 또는 과오로 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그리고 부주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합리적 이유로 인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다만 신청자측의 성실성이 결여된 경우를 제외하고, (b)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고등법원 및 선거법원에 신청해서 요건에 필요한 보고서 및 신청서의 제출불이행, 오기, 허위기재가 그의 질병 및 당해 후보자의 전임 선거사무장의 사망이나 질병 또는 과오로 인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그리고 부주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합리적 이유로 인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다만 신청자측의 성실성이 결여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선거구 또는 지방정부지역에서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청통지가 있은 후에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와 신청서의 성실성에 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불이행, 오기 또는 허위기재에 관한 공인된 면책을 허가하기 위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2) 후보자 및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의 보고서 및 신고서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 되는 보고서 및 명세서의 작성, 제출을 선거사무장 또는 부사무장인 자가 거부하였거나 불이행하였다는 사실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법원은 전조에 의하여 면책사유를 허용하는 명령을 하기 전에, 그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법원은 해당자가 출석하여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당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법원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소정의 양식으로 보고서 및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계산서에 포함시켜야 할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그 명세서에 관하여 검사를 받도록 출석인에게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이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백파운드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은 수정된 양식 또는 연장된 기간내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법원이 최선의 것이라고 산정하는 기타의 기간을 준수하여 보고서와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부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책사유를 허용하는 명령은 당해 명령에 의하여 면책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책임이나 결과로부터 신청자를 구제할 수 있다. 또한 선거비용에 관한 보고서 및 신청서와 관련해서 선거사무장의 작위 및 부작위가 후보자의 승인 및 묵인없이 행하여졌다는 것과 그런 작위 및 부작위를 방지하려고 모든 합리적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을 후보자가 법원에서 입증한 경우, 법원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행한 작위 및 부작위의 결과로 부터 후보자를 구제할 수 있다.

(4) 명령일자 또는 조건과 기간이 이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신청자가 이를 완전히 이행한 일자를 이 법에서 면책을 허가한 날로 본다.

제35조 (選擧費用에 관한 報告書 및 要旨書의 公告 : Publication of summary or return of election expenses) (1) 의회의원선거에서 관계공무원은 선거비용에 관한 보고서를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당해 선거가 실시된 선거구 또는 지방정부지역에 보급되고 있는 2개 이상의 신문에 열람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명시한

결과개요보고서를 공고하여야 한다.

(2) 관계공무원에게 제출된 보고서 또는 신고서(첨부서류 포함)는 그 공무원의 사무소 또는 그가 지정하는 편리한 장소에 보존되어야 하며, 수령 후 2년 동안 적당한 기간에 1실링의 수수료를 납부한 자에게 열람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위 2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관계공무원은 위 보고서 및 신고서를 폐기할 수 있다. 또한 당해 후보자 및 그의 선거사무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第 6 章 選擧人의 資格喪失(Disqualification of Elextors)

제36조 (腐敗 및 違法行爲者의 投票禁止 : Prohibition of persons guilty of corrupt or illegal practices from voting) 선거시 부패 및 위법행위 또는 위법고용·지급·임대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당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으며, 만약 투표권을 상실한 자가 투표한 경우 그 투표권 행위는 무효가 된다.

제37조 (資格喪失者의 投票禁止 : Prohibition of disqualified persons form viting) 이 법 및 부패행위법·시자치구법의 제4장 또는 공직선거시 부패행위를 금지한 법률 등에 의해 의회의원선거 또는 공직선거에서 또는 선거권이 상실된 자는 투표할 수 없으며, 만약 투표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제38조 (當事者의 意見陳述 : Hearing persons before he is reported guilty of corrupt of illegal practice) (1) 부패 및 위법행위로 인하여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소송을 제기당하지 않거나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어떠한 자가 선거법원이나 선거위원에 의하여 선거시 부패 및 위법행위의 죄를 범했다고 고발되기 이전에 사정이 허용하는 한, 선거법원이나 선거위원은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으며, 당 당사자는 의견진술의 기회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2) 선거시 부패 및 위법행위의 죄를 범했다고 선거위원에 의하여 고발된 자는 그 사실에 대하여 관할 형사법원이나 교도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해 법원은 법원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청취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 이 장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이 형사법원에서 집행된 직할의무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대법관에게 제기되는 경우, 대법관은 전술한 이의신청 또는 그 중의 일부가 선거소송을 위해 근무명부에 등록된 재판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재판관 중 1인은 그러한 위반사실이 발생한 지방정부지역이나 관할 구역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4) 선거법원의 권한 및 비용 그리고 선거법원에의 출석 등 의회의원선거법(1868년)의 제규정은 이 장의 관련사항에도 적용된다.

(5) 이 법의 시행후 선거시 부패 및 위법행위의 죄를 범했다고 선거법원 및 선거위원에 의하여 고발된 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면책증서의 소지여부를 불문하고 그가 죄를 범했다고 고발된 그 위반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다. 그러나 만약 지방정부지역 또는 선거구에 관한 당선을 조사하는 선거위원의 고발서라 하더라도 당해 선거소송의 재판에서 정당히 당선됐다고 선거법원이 판결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또한 당선된 의회의원의 재임기간동안 위의 지방정부지역 또는 선거구의 하원에

의 출석을 방해하지 못한다.

(6) 치안판사가 선거에 관하여 부패행위의 죄를 범하였다고 선거법원과 선거위원에 의하여 고발되는 경우에는 그 면책증서의 소지여부를 불문하고 검찰총장은 당해부패행위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대법관에 그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7) 법정변호사, 사무변호사 및 기타 이에 속하는 직업이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자가 선거에 관하여 부패행위의 죄를 범하였다고 선거법원에 보고되는 경우에는 그 면책증서의 소지여하를 불문하고 검찰총장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비행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조학원, 고등법원 또는 전기 직업의 비행을 수리하는 법정에 당해 사건에 관해 소추를 제기하여야 한다. 법조학원, 고등법원 또는 관계법정은 그 부패행위가 직업상 이루어진 비행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다.

(8) 면허법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a) 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면허의 범위내에서 증수뇌 또는 향응의 죄를 범했다고 법원에 고발된 경우에는 당해 법원은 그 위반사실을 관계면허대장에 기입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b) 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면허의 범위내에서 선거에 관련된 증수뇌 또는 향응을 고의로 받았다고 선거법원 또는 선거위원에 고발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법원 또는 선거위원은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면책증서의 소지여하를 불문하고 검찰총장은 면허당국에 그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임무이며, 당해 면허당국은 그 보고사항을 관계면허대장에 기입한다.

(c) 면허증을 소지한 자의 유죄행위에 대하여 면허대장에 기입된 보고내용

을 근거로 면허당국은 면허 또는 증명서의 갱신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면허당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허가 거부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9) 치안판사, 법정변호사, 사무변호사 또는 기타 전문가나 면허증 소지자가 선거에 관하여 부패행위를 범하였다는 증거가 선거위원에게 보고되는 경우, 당해 선거위원은 그 자격요건과 함께 위의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腐敗 및 違法行爲로 인한 投票權喪失者의 名簿 : List in register of voters of persons incapacitated for voting by corrupt or illegal practices) 모든 지방정부지역 및 자치구의 등록관은 이 법 또는 지방자치법(1882년) 제4장 또는 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기타 법률 및 공무원선거법 등의 시행후 발생하는 부패 및 위법행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관은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들의 위반사실을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第 7 章 選擧請願에 대한 訴訟節次 (Proceedings on Election Petition)

제40조 (違法行爲에 대한 選擧訴訟의 提起期間 : Time for presentation of election petitions alleging illegal practice) (1) 위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당해 선거나 당선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소송은 의회의원선거법(1868년)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법행위는 다음 기간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a) 당해 선거관리관이 당해 소송과 관계되는 의원 또는 선거대리인에 의하여 제출된 선거비용에 관한 보고서 및 신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

일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b) 특별한 금전지불 또는 기타 행동이 당해 선거 소송에서 심리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기 위하여 의원 및 선거대리인의 묵인에 의해 행해졌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당해소송은 금전지급 및 기타의 행동이 있은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당해 당선 및 선거를 무효라고 주장할 목적으로 의회의원선거법(1868년)에 의하여 제한된 기간내에 제출된 선거소송은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내에 고등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정될 수 있다.

(3) 이 장은 위법행위에 적용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거비용의 보고서 및 신고서와 관련된 위반행위에도 적용되며 또한 어떠한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행위가 부패행위에 상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4) 이 장의 목적상 (a)보고서와 신고서를 각각 다른 날에 수령한 경우에는 그 중 최종일, (b)선거비용에 관한 보고서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있어 정당한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책허가일 또는 둘 이상의 보고서 및 신고서에 관한 제출의 불이행에 대하여 그 면책사유가 수회에 걸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종의 면책허가일을 선거관리관이 보고서 및 신고서를 받은 날로 본다.

제41조 (選擧訴訟의 取下 : Withdrawal of election petition) (1) 선거소송의 취하를 허가하기 전에 소송관계인 전원 및 그들의 사무변호사 또한 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의 지정을 요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전기의 관계인의 후보자이었던 자의 선거사무장이 작성한 구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은 구술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구술서에는 당해 선서인이 알고 또한 신뢰하고 있는 것을 성실하게

소송의 취하와 관련하여 어떠한 합의나 조건 또는 약속도 행해지지 아니하였음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의 취하에 관하여 적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구술서에 그 합의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의 진술과 구술서의 기재사항은 부합되어야 한다.

(3) 신청인과 사무변호인의 구술서에는 당해 소송의 취하를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선거소송의 취하와 관련하여 어떠한 합의 및 타협 또는 약속을 한 경우, 만약 당해 합의 및 타협 또는 약속이 어떠한 금전지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또는 다른 선거소송의 취하를 고려하여 이루어졌거나 또는 전기한 구술서에(적법 또는 불법을 불문하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의 자는 기소에 의한 재판에 의하여 12월 이하의 징역이나 2백파운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5) 위 구술서의 사본은 취하신청이 심리되기 전의 합리적 시기에 검찰총장에게 제출한다. 법원은 소송취하의 허가를 반대하는 검찰총장이나 그의 보좌관 또는 기타의 대리인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그 증거보유자로부터 선서를 받고 이를 수취할 권한을 갖고 있다.

(6) 신청된 취하가 이 장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합의, 타협 또는 약속의 결과이거나 부정거래 또는 부정보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법원은 명령에 의하여 원제소인을 위하여 공여된 담보를 대위제소인에 의해 사용될 비용에 대한 담보로서 보류할 것을 명령하며 또한 담보에 지정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원제소인과 보증인이 대위제소인의 비용지불에 책임질 것을 지시할 수 있다.

(7) 선거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당해 법원은 하원의장에게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당해소송의 취하가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합의,

타협 또는 약속의 결과인지 또는 어떠한 금전지급을 대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의석이나 공직을 사퇴할 것을 대가로 할 것인지 또한 다른 선거소송의 취하를 목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만약 그렇다면 그 소송취하에 관련된 사정을 기술하여야 한다.

(8) 2인이상의 사무변호사가 제소인 또는 피소인을 위하여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를 대리하여 관여하고 있는 여부는 불문하고 그 구술서는 변호사전원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9) 사무변호사가 아닌 자가 선거소송에서 변호인으로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경우에 그 변호인은 이 장의 목적상 구술서를 작성하는데 사무변호사가 된다.

제42조 (選擧訴訟裁判의 存續 : Continuation of trial of election petition) 모든 선거소송의 재판은 당해 재판에 대한 정의의 형편상, 재판종결시까지 항상 법적 기일에 실시되며 당해년도 법관근무명부는 당해 재판 및 소송에 따른 모든 절차의 종결시까지 존속하나 그 전에 종료되는 경우도 있으며, 전기한 재판당국은 전기한 재판 및 절차를 위해 계속 존속한다.

제43조 (選擧訴訟裁判時 檢察總長의 出席 : Attendance of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 on trial of election petition) (1) 모든 선거소송의 재판시 검찰총장은 스스로 또는 보조자에 의해 또는 지금까지 언급한 대리인에 의해 재판에 참석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당해 재판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증인의 소환 및 심문에 관한 그리고 위반자기소에 관한 선거법원의 어떠한 명령에도 복종할 의무가 있다.

(2) 검찰총장은 선거법원의 명령이 없더라도, 당해 재판의 사건에 관하여 중요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재판에 출두하도록 하

여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를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

(3) 검찰총장은 선거법원의 명령이 없더라도 면책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부패 및 위법행위의 죄를 범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거법원에 그 위반자를 기소할 의무가 있다. 또한 검찰총장은 재판상 편리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관할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4) 어떠한 자가 부패 및 위법행위로 선거법원에 기소된 경우 당해 법원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소된 자를 약식재판할 수 있으며 그 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기소된 자는 이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그 위반행위가 부패행위인 경우 법원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백파운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반행위가 위법행위인 경우 이 법에 의해 적당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가 부패행위인 경우, 어떠한 자를 약식재판하기 전에 당해 법원은 기소된 자에게 배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어떠한 자가 위반행위로 기소된 경우 당사자가 배심재판을 선택하거나 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재판상 편리한 경우, 당해 법원은 소상으로 당사자를 기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약식재판법원에 출두명령할 수 있다.

(6) 그 명령이 있은 후 (a) 만일 당사자가 법원에 출두하여 그 위반행위가 기소할 만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재판을 받도록 하거나 그 법원출두에 따른 보석금납부를 명할 수 있다. (b) 만일 당사자가 법원에 출두하여 그 위반행위가 기소할 만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당사자에게 약식재판의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출두에 따른 보석금납부를 명할 수 있다. (c) 만일 기소된 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사정에 따라 약식재

판의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만약 위반행위가 기소할 만한 행위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소환장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그에게 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위반행위로 재판을 받는데 따른 보석금을 납부케 할 수 있다. 만약 당해 법원이 당사자를 직접 기소한 관할법원이 아닌 경우 당사자를 관할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제44조 (經費支給에 관한 選擧法院의 權限 및 訴訟費用 : Power to election court to order payment by country or borough or individual of costs of election petition) (1) 선거소송의 재판에 있어서 당해 소송의 피고인이 그 선거에 관하여 부패행위를 범한 증거가 없고 또한 당해 부패행위가 피고인의 인식과 동의하에 범하여진 증거가 없다고 선거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및 피고인이 그 부패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선거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의 일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다.

(a) 부패행위가 당해 선거에서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다고 법원에 보고된 경우 법원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선거가 시행된 지방정부나 자치도시가 지불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b) 선거법원은 어떠한 자가 금전의 제공이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선거에 있어서의 부패행위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패행위를 조장 또한 지원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변호사에 의한 청문의 기회와 함께 동 명령이 행해지면 아니되는지에 관한 이유를 제시하기 위한 증인의 심문 및 반대심문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사자 또는 그 중의 일부인에

게 의하여 지급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그 경비가 위와 같은 자의 1인 또는 2 이상의 자 또는 소송의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지급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부패행위 또는 위법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에게 비용지불을 명령하기 전에 이유를 제기하기 위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당해 범죄 또는 당사자에 관하여 법원에서 행해진 소송절차의 비용 또는 그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법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3) 고등법원에서의 소송행위, 소명 및 사건에 대하여 지급이 인정되는 경비에 관한 대법원규정은 원칙적으로 또한 가능한한 이 법 및 1868년의 의회의원선거법하에서의 소송비용 및 기타 소송절차에도 적용된다. 소송비용조사관은 고등법원에서의 소송행위, 소명 및 사건에 대하여 일반 임금수준에서 지급이 인정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인정해서는 아니된다.

第 8 章 기타 特別規定(Miscellaneous)

제45조 (腐敗 및 違法行爲에 대한 訊問 : Inquiry into alleged corrupt and illegal practices) 부패 및 위법행위가 어느 선거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검찰총장에게 보고된 경우, 검찰총장은 형사소추법(1879년)에 따라 당사자를 소추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제46조 (僞證으로 인한 資格喪失의 撤回 : Removal of incapacity on proof

that it was procured by perjury) 이 법의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선거법원의 유죄판결 및 선거위원의 고발에 의하여 부패행위금지법 및 이 법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자는 당해 유죄판결절차에서 증거를 제시한 증인과 그 보고서가 위증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고등법원이나 당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당해 재판에서 당사자에 관한 유죄판결 및 보고서가 위증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판명되면 고등법원이나 당해 법원은 자격상실의 취소명령을 하며 그에 따라 자격상실이 철회된다.

제47조 (폐 지)

제48조 (船舶을 이용한 選擧人의 輸送 : Conveyance of voters by sea in certain cases) 어떠한 선거인이 바다나 혹은 그 지류를 건너지 않고는 투표소에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은 당해 선거인을 선박으로 투표소까지 운반하는 제수단에 관한 규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그 운반수단에 대한 총비용은 이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한도액에 따른다.

제49조 (이 法 施行前 選擧에 대한 選擧委員의 調査禁止 : Election commissioners not to inquire into elections before the passing of this act) 이 법시행후 양원연석회의에서 어떠한 선거위원이 어떤 선거에 관한 부패행위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목적으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선거위원은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선거에 관한 조사권이 없으며 어떠한 증인도 조사에 응할 책임이 없으며 또한 이 법의 시행전 당해 선거에서 부패행위의 발생여부를 조사하려는 자문에 응답할 책임이 없다.

第 9 章 合法的 訴訟節次(Legal proceedings)

제50조 (法務長官의 의뢰에 의한 中央刑事法院의 裁判 : Trial in Central Criminal Court of indictment for corrupt practice at instance of Attorney General) 부패행위금지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한 소추가 고등법원에 제기되거나 법무장관의 의뢰에 의해 제출된 사건이송영장에 의하여 철회된 경우 법무장관은 재판의 목적상 편리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형사법원에서 당해 소추를 재판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51조 (訴追를 위한 期間制限 : Limitation of time for prosecution of offence) (1) 부패행위금지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부패 및 위법행위를 범하거나 또는 기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소추는 당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후 1년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당선에 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위원의 조사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후 1년이내에 실시되어야 하며, 선거위원의 보고서가 작성된 후 3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2) 이 법의 목적상 확실한 위반자에 대한 영장의 송달 및 집행이 당사자의 도주, 은닉 또는 고의적인 행동에 의해 집행될 수 없는 경우에는 소환장, 영장 또는 기타의 소송서류의 발부가 소송절차의 집행으로 간주되며, 위반자에 대한 상기영장의 송달 및 집행이 당사자의 도주, 은닉 또는 고의적인 행동에 의해 보류되고 발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절차의 집행으로 본다.

제52조 (腐敗行爲로 起訴된 자에 대한 違法行爲의 有罪判決 : Persons charged with corrupt practice may be found guilty of illegl

practice) 부패행위로 기소된 자가 그 정황으로 보아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당해 위반행위가 기소를 요하는 행위인 경우). 위법행위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그 범죄행위가 부패행위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법행위의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위법지불·위법고용 또는 위법임대차로 기소된 자도 그 위반행위가 부패 또는 위법행위에 상당한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53조 (贈收賂罪의 訴追에 관한 法律適用 : Application of enactients relating to prosecutions for bribery) (1) 1854년 부패행위방지법 제10장 및 1863년 부패행위금지법 제6장은 이 법의 의미내에서 증수뇌 및 부패행위 등 기타 위반행위에 관한 기소 및 고발에도 적용된다.

(2) 정식기소 및 약식기소 또는 이 법의 어떠한 기소 또는 금전적 벌금에 관한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도 기소된 자와 그의 처 또는 부도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일반적인 증인으로서 조사의 대상이 된다.

(3) 전항의 소추에서 기소된 자가 위법행위, 위법지불, 위법고용 또는 위법임대차로 유죄를 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며, 당해 증서에 언급되어 있는 선거가 정당하게 실시되었고 당해 증서에 기명되어 있는 자가 당해 선거의 후보자였다는 선거관리관의 증서는 그 안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제54조 (略式起訴 : Prosecution on summary conviction) (1) 이 법에서 약식재판으로 처벌을 받을 만한 모든 위법행위는 약식재판법에 의하여 기소된다.

(2) 이 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에 관한 간이재판법원의 기소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소추에 대하여 일반법원 및 하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다.

제55조 (略式裁判의 申請 및 選擧法院에 起訴할 만한 違反行爲節次法 : Application of Summary Jurisdiction and Indictable Offences Act to proceedings before election courts) (1) 이 법에서 선거법원의 약식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약식재판법은 그 위반행위가 단지 약식판결로 처벌할 만한 위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선거법원에 제기한 위법행위에 대한 약식기소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어떠한 자의 출석은 강요되며 그 사건에 대하여 이견을 듣고 결정을 내린 선거법원의 약식판결은 효력과 강제성이 있다. 또한 그에 따른 비용은 지불되며 당해 법원이 그런 판결이 발생한 지역의 약식재판인 것처럼 취급된다.

(2) 기소할 만할 위반행위를 범한 자의 재판부에 대한 기소규정은 대의와 일치하는 한 당해 법원이 치안판사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거법원이 기소된 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제56조 (高等法院의 裁判權 및 法院規則의 制定 : Exercise of jurisdiction of High Court, and making of rules of court) (1) 법원규정에 의하여 기소 및 형사절차에 관한 한 이 법에 따라 고등법원의 재판권은 고등법원 왕좌부의 재판관에 의하여 집행되며 다른 면에서는 선거소송의 재판을 위하여 법원이나 법학원의 근무명부에 등록된 재판관에 의하여 집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으로부터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은 위법행위·위법지급·위법고용 또는 위법임대차에 관한 또는 선거비용에 관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 법원규칙은 이 법 및 의회의원선거법(1868년) 그리고 그 법의 개정법률의 목적상 관계기관에 의하여 제정, 폐지 또는 수정되며, 절차 및 집행

에 관한 법원규칙은 대법원이 제정할 수 있다.

제57조 (檢察總長과 訴追費用 : Director of public procecutions, and espenses of prosecution) (1) 이 법에 의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위법행위소추법(1878년)의 제규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고 법무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 법에 의하여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 검찰총장의 보좌관 또는 대리인도 상기의 제규정 및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2) 이 법의 제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소추비용은 피고에 의하여 지불되지 아니하는 한 중죄에 대한 기소비용이 지불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기타의 자가 지불한다.

제58조 (地方政府나 自治都市 또는 기타의 者에 의하여 지불된 經費의 回收 : Recovery of costs payable by country or borough or by persons)

(1) 선거법원의 명령 또는 이 법에 의한 (기소비용이 아닌) 어떤 경비나 금액을 지방정부나 자치도시 또는 기타의 자가 납부하여야만 하는 경우에, 재무부는 당해 경비를 지불하여야 하며 지불된 경비만큼 회수하여야 한다.

(2) 선거법원의 명령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어떠한 경비나 금액이 어떠한 자에 의하여 납부되어야만 하는 경우에, 이러한 경비나 금액은 이를 수수하여야 할 자에 대한 그의 채무로 하며, 재무부에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채무로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지 추심할 수 없다.

第 10 章 補則規定·定義規定·留保規定·撤回規定(Supplemental Provisions, Definitions, Savings, and Repeal)

제59조 (證人의 答辯義務 및 免責證書 : Obligation of witness to answer, and certificate of indemnity) (1) 선거법원에 의하여 당해 선거에 관련하여 증인으로 소환된 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하며 면책이라는 구실로 그 선거에 관련된 위반행위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a)선거법원의 질문에 진실하게 답변하는 증인은 선거법원 직원의 서명서에 의하여 증인의 답변사실을 기재한 면책증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b)선거법원에 의한 질문 또는 법정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증거에 관하여 위증죄에 대한 형사소추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 또는 형사의 어떠한 소송에 있어서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어떠한 자가 선거에 관하여 면책의 증서를 받고 부패행위금지법 및 이 법에 따라 상기의 선거에 관하여 면책증서에 기재된 날짜전에 범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절차가 당사자에게 집행되는 경우에 그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면책증서를 근거로 하여 그 법적 절차의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당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기의 자에게 그 절차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

(3) 이 장에서 어떠한 규정도 면책증서를 받은 자라 하여도 이 법의 자격상실규정으로부터 해제되거나 또는 전기의 자격상실을 집행하려는 어떠한 절차로부터 해제되지 아니한다.

(4) 이 장은 "선거법원"이라는 표현이 선거위원을 포함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거위원에 대한 증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5) 지방정부나 자치도시의 선거소송에 출석하여 대리인으로서 정당히 행동하고 있는 사무변호사나 어떠한 자가 당해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거나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 당해 선거를 조사하는 선거위원은 단지 당해 소송에 사무변호사나 대리인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기의 변호사나 대리인을 심문할 권한이 없다.

제60조 (法務長官에 대한 選擧法院 또는 選擧委員의 報告書 提出 : Submission of report of election court or commissioners to Attorney General) 어떠한 자가 부패 및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보고할 때 선거법원 또는 선거위원은 당사자가 면책보고서를 소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즉 그 보고는 면책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를 기소하기 위하여 법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61조 (폐 지)

제62조 (公告 및 告知書의 送達 : Publication and services of notices)

(1) 이 법에 의하여 선거관리관에 의한 어떠한 공고도 투표법에 명시된 대로 행해져야 한다.

(2) 어떠한 소환장, 고지서 또는 서류가 고등법원 또는 어느 선거법원 또는 선거위원에 출석하라는 이유로든 또는 이 법의 목적상 법원 또는 선거위원 앞에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려거나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려는 이유이든 지방정부나 자치도시의 선거절차에 관련되는 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의 소환장, 고지서 또는 서류는 당사자에게 상기의 지방정부나 자치도시의 최종 거주지에 배달하거나 등기로 우송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우송은 그 서장의 우송료가 지불되고 주소성명이 정확히 기재되고 또한 등기로 우송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충분하다.

제63조 (候補者의 定義 및 同意없이 지명된 候補者의 留保 : Definition of candidate, and saving for persons nominated without consent) (1) 부패행위금지법 및 그 법의 개정법률에서 "선거시 후보자(candidate at an election)" 및 "후보자(candidate)"라 함은, 전후의 관계상 달리 해석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원선거에서 의회에 직무하도록 선거된 자, 선거에서 후보자로 지명된 자 또는 선거영장발부의 당일, 발부의 후 또는 선거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의원직의 취소 또는 의원의 결원이 발생한 후에 자기자신 또는 타인에 의하여 후보자로 선언된 자를 의미한다.

(2) 의회의원선거에서 어떠한 자가 그의 동의없이 타인에 의하여 후보자라고 공표된 경우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그 자가 이후에 그 공표에 승낙을 하지 않거나 또는 그 자가 공식적으로 지명되지 않는 한 어떠한 책임도 그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

제64조 (用語에 대한 一般的 解釋 : General interpretation of terms) 이 법에서 전·후의 관계상 달리 해석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election)"라 함은 의회에 직무할 구성원의 선거를 말한다.

"선거소송(election petition)"이라 함은 의회의원선거법 및 그 법의 개정법률에 따라 제기된 소송을 말한다.

"선거법원(election court)"이라 함은 의회의원소송에서 당해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를 말하며 고등법원이나 기타의 법원도 포함될 수 있다.

"선거위원(Election Commissioners)"이라 함은 선거위원법(1852년) 및 그 법의 개정법률에 따라 지명된 자를 말한다.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이라 함은 법무장관이 공석이거나 또는 당해 법무장관이 이해와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무차관(Solicitor General)을 의미하기도 한다.

"선거인(elector)"이라 함은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지닌 자들의 성명이 명부와 책자에 등록된 자들을 말한다.

"선거인 명부(register of electors)"라 함은 전술한 명부나 책자를 말한다.

"투표대리인(polliong agent)"이라 함은 투표법(1872년) 및 그 법의 개정법률에 따라 투표소에 입장하도록 지명된 후보자의 대리인을 말한다.

"자(person)"라 함은 법인격 유무를 불문하고 단체나 개인을 포함한다.

"사무실(committee room)"이라 함은 후보자가 선거에 관하여 그 대리자와 그곳에서 사무를 집행한다는 이유만으로서는 후보자가 주거로서 사용하는 가옥 또는 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선거인, 위원들 또는 기타의 자에게 그곳에서 연설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 또는 건물을 사무실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public office)"이라 함은 국왕아래의 직책 또는 시, 구의 헌장에 의한 직책 또는 지방자치법, 기초교육법이나 공중위생법에 의한 직책을 의미하며, 이는 시장, 포르보스타(스코틀랜드의 시장), 행정장관(chief magistrate), 의장, 시참사의원(alderman), 지방의회의원, 지방정부 또는 기타 지역의 공무원, 기타 지방기관의 위원 또는 지방의회, 위원회 등 기타 기관의 공무원 또는 기타 공무원의 직을 포함하며, 기타의 자치도시 또는 교구의 직책 등 위에서 언급된 헌장이나 법령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되는 기타의 직을 말한다.

"법원(judicial office)"이라 함은 치안법원(justice of the peace)을 포함한다.

"개인비용(person expenses)"이라 함은 선거에 관한 후보자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후보자의 적정한 여비 및 선거를 목적으로 또는 선거와 관련하여 지불된 호텔비 등의 적정한 숙박비용을 포함한다.

"기소(indictment)"라 함은 고소(informantion)를 포함한다.

"비용(costs)"이라 함은 수수료 및 경비을 포함한다.

"지불(payment)"이라 함은 금전상 또는 기타 보수를 말한다.

"금전적인 보상(pecuniary reward)"과 "금전(money)"이라 함은 지위, 신분 또는 직업 그리고 가치있는 대상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며 금전에 관한 의미는 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면허법(Licensing Act)"이라 함은 1792년과 1874년의 면허법을 말한다.

기타 다른 표현은 부패행위금지법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제65조 (留保規定 : Saving) 폐지되었거나 더이상 존속하지 않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당한 자는 계속 자격상실의 효력이 발생하며, 비록 그가 이 법의 재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이 법은 당사자에게 계속 적용된다.

第 11 章 스코틀랜드에 대한 法律適用 (Application of Act to Scotland)

제67조 - 제68조(생 략)

第 12 章 아일랜드에 대한 法律適用 (Application of Act to Ireland)

제69조(생 략)

懸案分析 93-1 英國의 選擧腐敗 및 違法行爲防止法制

1993年 2月 10日 印刷
1993年 2月 15日 發行

發行人 李 世 薰
發行處 韓 國 法 制 硏 究 院
印刷處 (株) 韓 國 컴 퓨 터 産 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722-0163/5
등록번호 : 1981. 8.11 제 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값 1,200원